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등 6개의 시행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여성가족부령 제 호

국토교통부령 제 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시행규칙안

제1조(「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조(「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3항”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한 허가·인가·신고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마목 및 제2호나목 중 “법 제8조”를 각각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법 제33조제3항”을 “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3항”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6조(「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호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4조(이의신청)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검정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정성적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이의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후 검정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사후검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이의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삭 제></u>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5. <u>법 제16조제3항</u>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 부	5. <u>법 제16조제2항</u>----- ----- ----- --
--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법 제8조 각 호의 해당법</u> <u>률에서 정한 허가·신고·인가</u> <u>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u> <u>서류</u>	<u>4의2.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u> <u>당 법률에서 정한 허가·인가</u> <u>·신고 등의 협의에 필요한</u> <u>관련 서류</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서류 등)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서류 등) ①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법 제33조제3항</u> 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u>법 제33조제1항</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기준) <u>법 제9조제3항</u> 에 따른 물 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기준) <u>법 제9조제4항</u> ----- ----- -----.
제10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① 국토교 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인 가를 한 때에는 같은 조 <u>제4항</u>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① ----- ----- ----- ----- <u>제5항</u>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시행의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같은 조 <u>제4항</u>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 시하여야 한다.	② ----- ----- ----- ----- <u>제5항</u>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사업시 행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 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 다)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 외한다]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 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 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u>법 제16조제2항</u> 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 요한 서류	8. <u>법 제16조제3항</u> ----- ----- -----
9. · 10. (생 략)	9. · 10. (현행과 같음)